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
보상 등에 관한 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문승욱 (산업통상자원부 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공무원에 한정하여 지급하던 직무발명 보상을 국가에 소속된 비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연구자 간 보상의 차별을 해소하고, 국가기관에 직무발명의 승계여부 결정권을 부여하여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우수한 직무발명의 창출과 민간으로의 기술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

3. 주요내용

가. 비공무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 근거 마련 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 및 제25조 개정)

- 1) 직무발명의 발명자가 “공무원”에서 비공무원이 포함된 “공무원등”으로 확대되도록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,
- 2) 조문 내의 “공무원”을 “공무원등”으로 변경함

나. 국가의 직무발명 선별 승계 근거 마련 (안 제4조제1항)

- 1) 국가가 직무발명을 선별하여 승계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“승계한다”에서 “승계할 수 있다”로 변경하고,

2) 단서의 “국가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”를 삭제함과 동시에 “분쟁 중인 경우”의 의미를 구체화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”을 “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공무원”을 “공무원등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공무원(국가공무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을 “공무원등(국가공무원 또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, “공무원의”를 “공무원등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공무원”을 “공무원등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승계(이하 “국가승계”라 한다)한다”를 “승계(이하 “국가승계”라 한다)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가승계하지 아니한다.

제5조 중 “공무원”을 “공무원등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공무원”을 “공무원등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4호 중 “공무원”을 “공무원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·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</u>	<u>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 ·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</u>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발명진흥법」 제10조,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<u>공무원</u>의 직무발명의 처분 · 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직무발명”이란 <u>공무원(국가공무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<u>공무원의</u>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. 2. ~ 5. (생략) 6. “발명자”란 직무발명을 한 <u>공무원을</u> 말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공무원등</u>----- ----- ----- -----. 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. 1. ----- <u>공무원등(국가공무원 또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----- ----- ----- <u>공무원등의</u> ----- ----- -----. 2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<u>공무원등</u>-----.

제4조(직무발명의 국가승계) ①
 국가는 「발명진흥법」 제10조
 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
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
 리 및 특허권을 승계(이하 “국
 가승계”라 한다)한다. 다만, 분
 쟁 중이거나 국가승계가 적당하
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
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·③ (생략)

제5조(발명의 신고) 공무원이 자
 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
 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
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
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
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직무발명의 승계결정) ①
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
 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
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
 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
 가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
 며,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
 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
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

제4조(직무발명의 국가승계) ①

 ----- 승계(이하 “국
 가승계”라 한다)할 수 있다. 다
 만,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
 등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소송
 상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
국가승계하지 아니한다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5조(발명의 신고) 공무원등-----

 -----.

제6조(직무발명의 승계결정) ① -

 ----- 공무원등-----

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	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5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특	제25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--
허청장(제24조에 따라 특허청장	-----
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	-----
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	-----
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	-----
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	-----
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	-----
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	-----
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	-----
수 있다.	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	4. -----
<u>공무원</u> 직무발명과 관련된 신	<u>공무원등</u> -----
청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	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	
연 락 처	(042) 481 - 5172